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1. . . (제 회)	

해 양 환 경 보 전 및 활 용 에 관 한
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문성혁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해수면 및 해수온 상승 등 기후변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기후변화 대응이 시급한 상황으로, 해양 기후변화 대응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자체 및 국민 등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및 해양환경 관리에 전문성을 보유한 해양환경공단에 해양 기후변화 대응 업무를 위탁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업무의 위탁(안 제13조제1항)

- 1) 해양환경공단에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후변화 대응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 · 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전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

대통령령 제 호

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종합조사에 관한”을 “다음 각 호의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후변화 대응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
2.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종합조사에 관한 업무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업무의 위탁) ① 해양수산 부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 라 <u>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 환경종합조사에 관한</u> 업무를 공 단에 위탁한다.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② · ③ (생 략)	제13조(업무의 위탁) ① ----- ----- -- <u>다음 각 호의</u> ----- ----- -----. 1. <u>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해양 기후변화 대응활동 지원에 관 한 업무</u> 2. <u>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 환경종합조사에 관한 업무</u>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0 - 5281